

예 산 총 칙

제1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8,089,078,424	242,672,353
일 반 회 계		6,673,096,873	200,192,906
특 별 회 계		1,415,981,551	42,479,447
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62,331,198	10,869,936
	① 상 수 도 사 업	147,361,633	4,420,849
	② 하 수 도 사 업	214,969,565	6,449,087
	기 타 특 별 회 계	1,053,650,353	31,609,511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22,995,749	12,689,872
	② 수 질 개 선	2,747,597	82,428
	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	258,707	7,761
	④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	358,178	10,745
	⑤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4,465,941	133,978
	⑥ 택 지 개 발 사 업	204,374	6,131
	⑦ 교 통 사 업	28,363,596	850,908
	⑧ 광 역 교 통 시 설	18,244,387	547,332
	⑨ 학 교 용 지 부 담 금	10,983,325	329,500
	⑩ 산 업 단 지	3,701,026	111,031
	⑪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90,130,177	2,703,905
	⑫ 도 시 철 도 사 업	250,072,271	7,502,168
	⑬ 소 방	221,125,025	6,633,751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 사업명세서”와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10,278,249천원”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“751,500,000천원(고금리지방채 차환 370,300,000천원 포함)”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